

향후의 배우자폭력방지법* **

- 제정 후 10년을 맞이하여 -

김 잔 디

건국대학교 박사수료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배우자폭력방지법 성립의 경위
- III. 고령자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과의 비교
- IV. 향후의 DV 방지법

【국문초록】

가정폭력은 일반적으로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배우자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폭력이다. 배우자간의 폭력은 가정과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지원비용, 의료비용, 경찰·사법비용, 노동력의 상실 등에 의하여 사회적인 큰 손실을 유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배우자간의 폭력을 범죄가 아닌 가정사의 하나로 여겨 문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배우자간의 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파악하고 본격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 2001년 배우자폭력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 투고일 : 2012.05.23, 심사완료일 : 2012.06.21, 제재확정일 : 2012.06.24

** 이 논문은 「筒井 隆志, 配偶者暴力防止法の今後-制定後10年目を迎えて、立法と調査、2010」을 번역한 것이다.

배우자폭력방지법의 제정 시부터 현시점까지를 개괄하고 동시에 아동방지법·노인학대방지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고려해보도록 하겠다.

I. 들어가는 말

배우자폭력방지법(이하에서는 ‘DV방지법’이라고 함)이 성립된 후 9년이 경과하였다¹⁾. 본 법은 2000년 6월 뉴욕에서 개최된 국련특별총회(國連特別總會) ‘여성 2000년 회의’에서 채택된 ‘北京선언 및 行動綱領실시를 위해 새로워진 행동과 계획(initiative)’에서 각국에 요청한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제도의 강화’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참의원 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이하에서는 ‘공생조사회’라고 함)가 발의한 것이다.

배우자간의 폭력(이하에서는 ‘DV’라고 함)은 피해자의 생활지원의 비용, 경찰·사법의 비용, 노동력의 상실, 신체적 상해에 대한 의료비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손실을 준다. 캐나다의 CRVAWC²⁾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의해 ①사회보장, 교육 분야에서 약 23억6천9백만달러, ②경찰·재판의 분야에서 약 8억7천2백만달러, ③노동의 분야에서 5억7천7백만달러, ④건강·의료분야에서 약 4억8천만 달러로 총 42억2천6백만달러가 손실되고 있고, 그 중에서 국가가 87.5%, 개인이 11.5%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구가 캐나다의 약 4배인 것을 고려하면 DV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약 1조엔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DV에 대한 대응체제가 우선 상담을 하고, 그 후 일시보호, 보호명령발령으로 진행되는 것을 반영하여 DV의 현황에 대하여 설명할 때에는 <그림 1>의 배우자폭력상담센터의 상담건수, <그림 2>의 부인상담소의 일시보호건수, <그림 3>의 보호명령건수의 既濟건수³⁾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일본의 DV는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1) 본논문은 2010년 11월에 작성된 논문이므로 배우자폭력방지법 제정 후 9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였으나,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동 법 제정 후 11년이 경과하였다.

2) Centre For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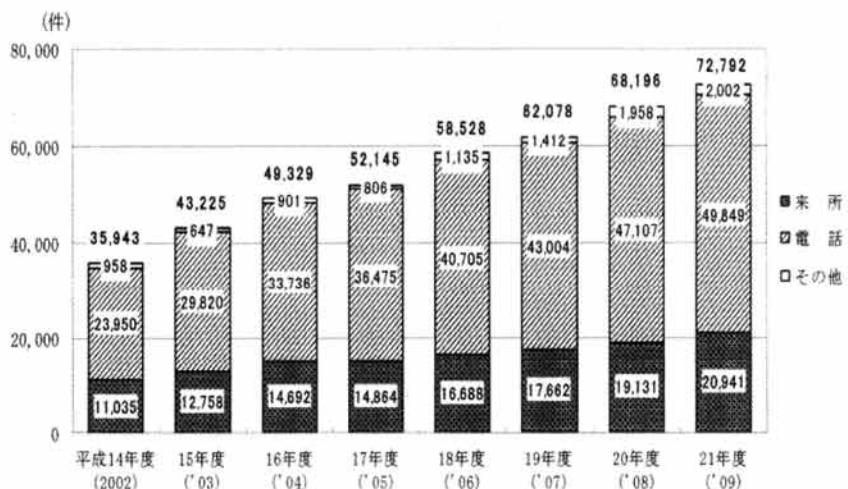
3) 필요한 절차나 의무 등이 이미 끝난 보호명령의 건수.

고 추정 할 수 있다.

미국에 있어서 DV는 일본보다 훨씬 이전부터 문제로 되어 왔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이 연구들은 크게 DV를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보는 것과 배우자간의 힘의 관계(力關係)에 초점을 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DV를 주로 빈곤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적 현상으로 파악하고 빈곤, 실업, 이혼, 약물·알코올 의존 등의 요인을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논점이 되었고, 가해자의 재교육·카운셀링과 함께 가해자의 경제상태의 개선을 위한 취업지원이 중시되었다. 후자는 폭력에 있어서 인종, 주부의 학력과 취업, 거주지역 등의 분석이 주요한 논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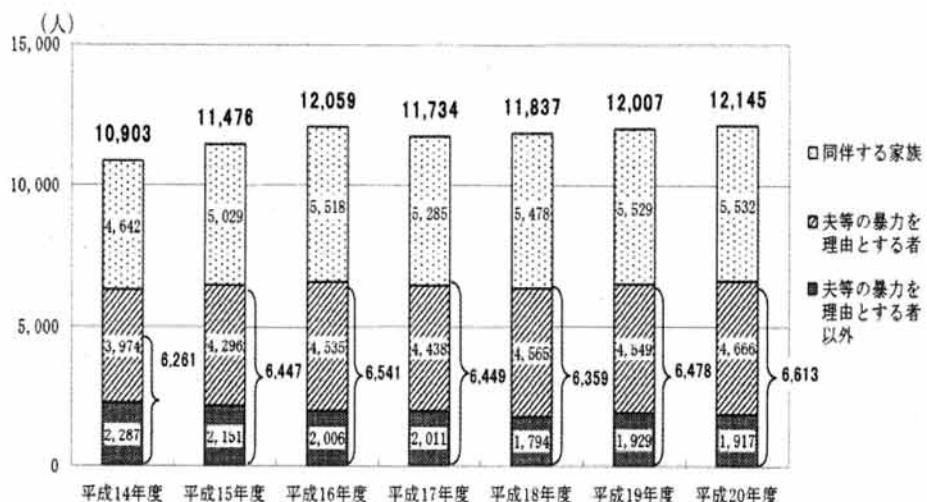
본고는 제정 후 10년이 경과한 DV방지법에 대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개괄함과 동시에 그 외의 학대방지법과의 관계성을 고려한 후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 1> 배우자폭력상담지원 센터의 상담건수 추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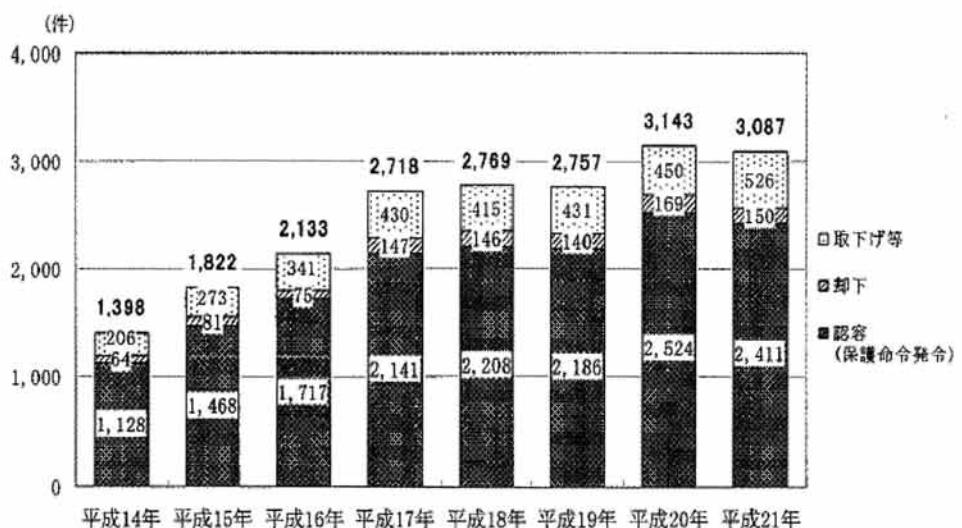


4) 일본 내각부 조사 : http://www.gender.go.jp/e-vaw/data/dv_dataH2205.pdf

<그림 2> 부인상담소의 일시보호 건수⁵⁾



<그림 3> 배우자폭력방지법을 기초로 한 보호명령의 건수⁶⁾



5)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 http://www.gender.go.jp/e-vaw/data/dv_dataH2205.pdf

6) 최고재판소의 자료에 의하여 내각부 작성 : http://www.gender.go.jp/e-vaw/data/dv_dataH2205.pdf

II. 배우자폭력방지법 성립의 경위

1. 법의 성립 경위

1985년 7월 ‘國連婦人の 10년 나이로비(Nairobi) 세계 회의’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다뤄지게 되었다. 이 영향으로 일본에서는 1996년 12월에 책정된 ‘男女公同參畫’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중 남편, 파트너로부터의 폭력에 대해서는 각종 시책을 충실하고 기존의 법제도의 엄격히 실시할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새로운 법제도·대책에 대하여 연구할 것 등의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일본에서는 국가적 수준의 실태조사가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 DV는 사회문제로서 표면화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도 법제적으로도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 특히 여성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배우자간의 폭력에 관한 입법화에 관한 요청이 높아져 의원입법에 의한 신규입법의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그리고 2000년 4월 26일 참의원 독자 기관인 공생조사회의 이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프로젝트 팀’이 설치되었다. 여기서는 쉘터(shelter) 관계자, 부인 상담소 관계자, 변호사, 학식 경험자 등으로부터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성청(中央省廳)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고, 구성원간에 토의를 거치는 등 입안을 위하여 약 30회 정도 조사·검토를 실시하였다.

2001년 3월 28일에는 초안에 대하여 프로젝트 팀의 합의를 얻은 후 4월 2일 공생조사회(共生調査會)에서 초안의 취지를 설명한 후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전원일치로 조사회제출법률안으로서 발의되었고, 4월 4일 참의원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같은 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 동의를 얻어 가결 성립되었다. 본 법은 신설된 ‘배우자폭력 상담지원센터’등 예산조치가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그 외의 규정에 대하여서는 2001년 10월 13일부터 집행하게 되었다.

2) 신규입법시의 개요

2001년의 신규입법 시점에 있어서 DV방지법의 주요한 내용은 이하와 같다.

① 국가·지방공공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무를 진다.

②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도도부현(都道府縣)은 부인상담소 그 외에도 적절한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시설들이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이하에서는 '지원센터'라고 함)로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지원센터는 피해자에게 상담·카운셀링·일시보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③ 통보

피해자를 발견한 자는 지원센터 및 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료관계자도 지원센터 및 경찰관에게 통보 할 수 있다.

④ 보호명령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에 의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경우 재판소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당해 배우자에 대하여 6개월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및 2주간 주거지로부터 퇴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보호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480,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홍보·계발 및 직무관계자의 연수, 민간단체의 원조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는 배우자 폭력 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국가의 이해를 돋기 위한 교육 및 계발을 하며, 직무관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권 및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특성 등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⑥ 개정에 관한 규정

본 법은 3년에 1회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정당시의 DV방지법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과 보호명령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단 보호명령을 재판소에 있어서 각종 명령과 동등하게 취급하면 결정이나 절차의 자료수집 등에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簡易·신속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보호명령위반의 벌칙을 형벌로 해야 하는지, 과료로 해야 하는지도 논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현재의 형태로 정착하게 되었다⁷⁾.

그 외에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생활의 기반이 되는 주거로부터의 퇴거는 개인의 권리 행사 등에 현저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퇴거명령의 기간을 2주로 제한하는 것, 스토킹규제법, 형법과의 정합성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적 폭력을 당한 자에 한정한다는 규정 등은 일본의 법체계에 합치하도록 배려한 법안이었다. 이와 같이 제정당시의 DV방지법은 어디까지나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생명·신체의 위해가 절박한 피해자의 보호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인권구제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하겠다.

3. 1차 개정의 개요(2004년)

1) DV방지법의 효과

DV방지법의 규정은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효과가 있다. 이것은 DV방지법 제정 전에도 남편의 폭력에 의해 일시보호를 받아들였던 부인상담소의 일시보호건수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 전국 부인상담소의 1차적 보호건수 중 남편의 폭력으로 인하여 입소한 건수는 1992년 조사당시에 867명, 1995년 1,044명, 1996년 1,232명이었고, 법이 성립한 2001년 2,680명, 법이 시행된 후인 2002년에는 3,974명으로 급증하였다.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해당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동학대 등 다른 학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잠재화 된 문제가 법제화에 의해 표

7) 이 사정에 대해서는 南野 知恵子/神本 美恵子/山本 香苗/吉川 春子/福島 みづは, 「詳解DV防止法」, きょうせい, 2002 참고.

면으로 드러나는 결과였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폭력의 실태를 밖으로 드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DV방지법의 제정은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DV라는 용어를 일반화 시킨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의 <그림 3>과 같이 법제정 이후에도 보호명령의 건수는 증가하였고 매년 2,000명 이상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2) 개정에 대한 요청

DV방지법은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켰지만 현장에서 피해자의 구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인상담소직원들이나 쉘터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법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고, 법 개정을 염두에 둔 의견도 많이 공표되었다. 이러한 요청들의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았다.

① 보호명령의 대상범위의 확대

DV방지법의 보호명령 대상자가 되는 자는 배우자 및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와 같은 사정이 있는 자로부터의 폭력에 한정되어 있다⁸⁾. 법제정시에는 이혼 후 전배우자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스토퍼규제법을 적용할 수 있었으므로 제외된 것이었다. 애인(혼인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에는 타인이다기 때문에 DV라는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혼 후 전배우자나 교제중인 애인은 배우자와 같이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加해자가 되기 때문에 전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의 폭력을 입은 피해자도 보호명령의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⁹⁾.

8) 하지만 지원센터에 의한 상담대응이나 보호명령 이외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상의 제한은 없다.

9) DV방지법은 '특별한 관계인 커플'에 대하여 접근금지명령 등 일반의 커플과는 다른 사권의 제한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법률이다. 현실에서 교제상대방으로부터의 폭력(이른바 데이트 DV)가 다발하고 있지만 혼인관계가 아닌 커플을 법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적어도 이하의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특별한 관계인지 아닌지의 판정이다. 부부라면 특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애인간은 기본적으로 타인이고 부부와 같이 긴밀한 연결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정이 어렵다. 두 번째는 행정비용의 문제이다. 한번 혼인을 한 자에 대하여 특정이 가능하지만 애인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상의 불특정다수가 되고 행정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타인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더욱이 아동도 보호명령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아동을 가해자가 테려간 경우 그 아동을 데려오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와 만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자의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의 부모, 형제, 지원자, 시설관계자 등으로 보호명령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② 보호명령 신청절차의 간소화

보호명령은 가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객관성·공평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그 신청에는 경찰직원이나 센터직원에 대한 상담·보호의 사실의 기재가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아 宣誓供述書를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피해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11,000엔, 약160,000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경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③ 보호명령대상자의 접촉의 제한

보호명령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편지·팩스·전자메일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압력의 방지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한 수단에 의한 접촉도 법 규정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④ 폭력의 정의

형법상의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법의 운용에 있어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추가되어 있지만 폭행의 사실을 증거로서 남기기 어려운 정신적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의 범주로부터 제외시켜 왔다. DV방지법도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지만 정신적 폭력(폭언), 성적 폭력, 금전적 폭력(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등에 대해서도 DV에 포함시켜 보호명령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¹⁰⁾.

10) 제정시의 DV방지법에 있어서도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해서는 정신적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등 일정의 배려가 있었다.

⑤ 자립지원의 명확화

피해자의 자립에 관한 지원은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강하게 주장되었다.

⑥ 외국인피해자의 보호

피해자 중에서는 일본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도 많이 포함하고 있고, 불법체류의 상태에 있는 자도 적지 않으므로 외국인피해자에 대한 법률의 보호를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⑦ 가해자의 생생프로그램

특히 미국에 있어서 가해자 생생프로그램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본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단 일본과 미국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형의 집행의 대체수단으로서 수강명령 및 교도소에서의 도입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3) 개정의 과정

상기와 같은 요망이나 의견 등을 배경으로 2003년 2월 12일 공생조사회사이사회에서 각 회원 중 추천 받은 1명씩으로 구성된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졌다. 이 팀은 학식경험자, 관계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중앙성청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구성원간의 토의를 거쳐 법률의 개정을 위하여 총 24회의 조사·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아진 DV방지법 개정안은 2004년 3월 25일 공생조사회에서 초안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회제출법안으로 결정하고 3월 26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5월 21일 중의원 회의에 위임하여 5월 26일 동위원회에서 취지를 설명, 질문, 채결하여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또한 다음날인 27일 중의원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4) 개정의 내용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1>의 좌측과 같다. 1차 개정에 있어서 일본의 DV방지법은 긴급한 위기를 회피하는 인권구제적인 성격으로부터 피해자의 자

립지원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제2조는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한다’로부터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로 개정하여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명문화 하였다.
- 제3조제3항의4호는 배우자폭력지원센터의 업무로서 ‘피해자가 자립하여 생활 할 수 있도록 취업의 추진, 주택의 확보, 원호 등에 관한 제도의 이용에 대한 정보의 제공, 조언, 관계기관과의 연락조정 등의 원조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제8조의3에서는 복지사무소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寡婦)복지법 그 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가해자로부터 떨어지도록 돋는 것을 자립지원의 일종이라고 하면 이하의 조문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제10조제1항제2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주거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는 명령의 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연장한 것.
- 제18조에서 퇴거명령의 재신청을 인정한 것.

설립당시의 퇴거명령의 기간이 2주로 규정되었던 것은 가해자를 생활을 본거지인 주택으로부터 일정기간 퇴거시키는 것에 의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¹¹⁾. 하지만 연장된 기간은 피해자의 본격적인 이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 된다¹²⁾. 이에 대해 중의원법무위원회의 질문 시 프로젝트팀의 입장으로 근무했던 미나미노(南野)參議院의원은 퇴거명령을 2개월 연장하는 근거에 대하여 ‘…2주일이라는 현행법의 퇴거명령의 기간 내에 피해자는 이사를 할 수 없고 그 기간은 신변의 정리, 이사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불충분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퇴거명령의 기간

11) 南野 知恵子/神本 美恵子/山本 香苗/吉川 春子/福島 みづほ, 앞의 책, 167면.

12) 南野 知恵子/神本 美恵子/山本 香苗/吉川 春子/福島 みづほ, 「詳解改正DV防止法」, 2005, 251면에서는 ‘2개월의 기간이면 그 기간내에 신변의 정리나 주거지의 확보등의 준비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라는 문언이 있다. 또한 개정법 제18조는 퇴거명령 제출발의 조건으로서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2개월을 경과한 날 까지 당해주거로부터 이사를 완료할 수 없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을 2개월로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¹³⁾'라고 답변하였다.

퇴거명령의 기간의 연장과 재신청을 가능하게 한 결과 이론적으로 가해자는 반영구적으로 집에서 퇴거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DV방지법은 인권구제적인 목적으로부터 피해자 자립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표 1> DV법 1차 개정과 2차 개정의 내용

개정내용	1차개정	2차개정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확대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부정한 공경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미치는 것'으로부터 '배우자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폭력 또는 그것에 준하는 신체에 대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언동'으로 확장하여 정신적 폭력과 성적 폭력도 포함하였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로부터 '폭력을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제1장의 2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기본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무대신은 기본방침을 도도부현은 기본방침에 따른 기본계획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군의 기본계획의 책정 배우자로부터의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해 시책의 실시에 관한 기본계획의 책정을 시도군의 노력의무로 한다.
제2장 배우자폭력 상담지원 센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자립 지원의 명확화 등 피해자가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취업의 촉진, 주택의 확보, 지원 등에 관한 제도의 이용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조언, 관계기관과의 연락 등의 원조를 할 것을 센터의 업무로 명기한다. • 시도군의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폭력지원센터에 관한 개정 시도군의 적절한 시설에 있어서 배우자폭력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시도군의 노력의무로 함과 동시에 동 센터의 의무로서 피해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안전의 확보를 명기한다.

13) 제159회 국회중의원법무위원회의록 제30호, 2004년 5월 26일.

	<p>업무의 실시</p> <p>시도군에 있어서도 그 설치하는 적절한 시설에 있어서 당해 각 시설이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와의 연계 <p>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는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필요에 응하여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위해 노력한다.</p>	
제3장 피해자의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본부장등의 원조 <p>경찰본부장등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원조의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지원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무소에 의한 자립의 지원 <p>복지사무소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 및 과부 복지법 그 외의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명령의 대상자의 전배우자 확대 <p>이혼 후 전배우자로부터 계속된 신체에 대한 폭력에 의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받을 위험이 큰 경우 보호명령의 대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접근금지명령 <p>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미성년자의 아동에 대하여 배우자와 면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판소는 피해자에의 접근금지명령과 같이 피해자의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아동이 15세 이상인 경우는 그 동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와 함께 생활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주거의 배회 금지 <p>퇴거명령에 있어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주거로부터 퇴거와 함께 당해주거의 근처에 배회하는 것을 금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거명령의 기간의 확대 <p>퇴거명령의 기간을 2주일로부터 2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명령제도의 확충 <p>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에 대하여 폭력을 받았다’는 조건에 ‘생명등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추가함</p> <p>보호명령이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배회, 전화, 메일 등을 추가하였다.</p> <p>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p> <p>피해자의 친족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소는 피해자의 접근금지명령과 함께 피해자의 친족 등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폭력지원센터장의 보호명령 발령 등에 대한 통지 <p>보호명령의 시작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원 센터에 상담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그 사</p>

	<p>월로 확대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거명령의 재신청 퇴거명령의 재신청을 인정하고, 퇴거명령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것을 명한다. 단 가해자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것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p>실을 당해 센터장에게 통지 한다.</p>
제4장 雜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관계자의 의무 직무관계자는 피해자의 국적, 장해의 유무등과 관계없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개정의 규정 본법은 집행 후 3년을 경과하면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4. 2차 개정의 개요(2007년)

1) 개정의 과정

전술의 관계 단체 등의 요망사항의 몇 가지는 1차 개정에서 실현되었다. 특히 퇴거명령 기간을 연장한 것이나 재신청을 인정한 것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립을 위한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보호명령대상의 확대, 물리적인 폭력 이외의 폭력에 대한 범위의 확대, 피해자지원을 시행하는 관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¹⁴⁾의 개정은 보류되었다.

개정법에서도 3년 후의 개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2007년의 개정을 염두에 두고 각종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2007년 당시 제정 시 및 1차 개정 시에 개정안을 발의한 공생조사회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부 男女公同參畫의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전문심사회의 DV방지법 개정의 제언을 받

14) 법 제 26조는 제정시점에서부터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의 책무로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를 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필요한 원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아들여 당시의 여당의 프로젝트팀이 개정요강안을 만들었다.

DV방지법 개정안은 2007년 6월 19일 참의원법무위원회에서 초안의 취지를 설명한 후 전원일치로 위원회제출법률안으로 결정하고, 6월 20일 참의원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 7월 3일 중의원법무위원회에 위임하고, 7월 4일 동위원회에서 취지를 설명, 질문, 채결하여 전원일치로 가결되어 다음날인 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로 가결 성립하였다.

2) 개정의 내용

개정의 내용은 <표 1>의 우측과 같다. 조문이 대폭 추가된 1차 개정과는 달리 2차 개정에서는 보호명령이 금지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8면에 걸쳐 열거하는 등 가해자·피해자관계에 대하여는 기술적인 개정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군에 기본계획책정과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노력을 의무화 한 것은 원칙적으로 현(縣)의 업무로 여겨왔던 DV대책의 기초 자치단체의 관여를 받게 되는 것으로 DV 문제에 대한 행정 분담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또 3년 후의 개정규정은 제거되었다.

III. 고령자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과의 비교

1. 고령자학대와 아동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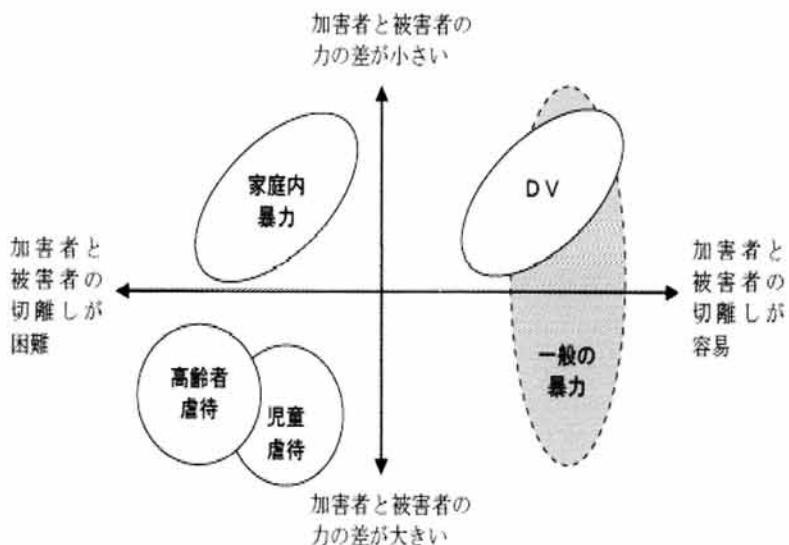
DV는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폭력이다. 가정 내의 폭력은 DV 외에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인 아동학대, 자식이 고령의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하는 고령자학대, 자식의 부모에 대한 폭력인 가정 내 폭력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들이다. 고령자학대, 아동폭력에 대해서는 종래의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과 여러 학대방지법이 제정되어 관계기관이 대처하고 있다¹⁶⁾. DV에 관한 제도는 이러한 가정 내의

15) 1차 개정에서 시도군도 지원센터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노력의무는 아니 였다.

16)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기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학대를 받은 아동이 있을 때 복지사무장의 조치, 아동상담소장의 조치, 아동의

다른 폭력에 대한 시책과도 일정의 합치성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4> 가정 내 폭력의 유형¹⁷⁾



각종시설에 입소, 보호자로부터 격리조치 등에 의해서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다. 이러한 행정기관에 의한 가족개입은 아동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선택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계약의 집행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등에 의해 대등한 계약관계를 성립·기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필연성·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자의 학대에 대해서는 2002년 후생노동성이 의료경제법연구구성에 위임하여 실시한 '가족 내의 고령자학대에 관한 조사(조사대상은 전국의 간호보호사무소,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센터 등)'에 의하면 학대라고 생각되는 사례는 피학대자의 평균연령 81.6세, 여성인 4분의 3을 차지하였고,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학대자로는 아들 32.1%, 며느리 20.6%, 배우자 20.3%, 딸 16.3%였다. 또한 학대의 종류는 심리적 학대가 60%, 돌봐주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고령자학대의 대부분은 고령자로 돌봐야 할 필요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친자식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를 돌봐주는 것에 대하여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10조의4제4항은 '65세 이상의 자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介護保険法에서 규정하는 방문간호를 이용하기 험지하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자에게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자의 주거에 있어서 제5조의2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거나 당해 시도군 이외의 자에게 해당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위탁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고령자의 합의가 필요한 것 연금 등의 재산의 관리권이 학대자에게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학대에 대해서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17) 简井 隆志, 配偶者暴力防止法の今後-制定後10年目を迎えて, 立法と調査, 2011, 82頁.

<그림 4>는 당사자 쌍방의 경제력·交涉力·體力 등 힘의 차이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물리적·제도적인 분리의 곤란성에 의하여 각종의 폭력을 분류한 것이다. DV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가 경제력·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다른 폭력과 비교하여 당사자 간의 힘의 차이가 적거나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에 가깝다¹⁸⁾. 반면 아동학대, 고령자학대는 당사자 간의 힘의 차가 크고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도 쉽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 고령자학대는 가해자를 통상적인 절차로 처벌한 경우 대다수의 가해자는 강제적으로 집을 떠나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주거지가 없다면 생활이 익숙해진 집으로부터 나와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고령자학대의 경우 그것을 피하기 위해 학대의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보고되고 있다¹⁹⁾. 반면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의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 아동은 기본적으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고 부모로부터 벼름 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할 것이다. 설령 자신을 학대 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동은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에게 벼름받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자기를 수용해줄 사람은 부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을 책임하고 부모를 감싸는 경우가 적지 않다. 더욱이 시설에 입소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어렵게 되는 등 아동의 캐리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상과 같이 고령자학대, 아동학대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가족해체)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 대해서도 행정의 개입에 의한 가족의 해체는 반대로 학대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격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인권 구제적인 의미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는 유효하다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고령자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은 親子의 재통합을 위한 당사자 지도, 조언을 규정하고 있지만²⁰⁾ 양법 모두 재통합의

18) 단 여성을 어느 정도 사회적 약자로서 보느냐에 따라 위치가 바뀌고 있다.

19) 각주 17)의 '가정 내에 있어서 고령자학대에 관한 조사'참조.

20) 고령자방지법은 제6조에 시도군에 의한 양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조언을 제14조 1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기본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가해자가 행정 등의 지원에 의해 문제 행동을 극복하고 친자의 관계가 재구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행복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고, 행정 비용의 감소와도 연관되는 것이다.

2. 가정폭력(DV)

DV방지법은 특히 1차 개정 이후 폭력이 있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떨어져 자립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부관계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이 없으면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측은 결혼·출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은 남성보다 많고, 그 중에서는 특히 경제적인 기반의 상실이 크다²¹⁾. 가정폭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 및 생활상의 문제로 이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폭력을 견디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특히 DV방지법 제정 전에는 여성 측이 이와같이 고통을 참는 경우가 많았다고 사료되므로 법이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의 사정은 모두 다르고 비록 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애정이 식은 것은 아닐 것이다. 즉 피해자가 ‘폭력이 있었지만 헤어질 정도로 심하진 않다’ 또는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다면 헤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례도 있다. 반면 아동의 장래나 가업 등의 사정으로 인해 헤어질 수 없는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폭력이 행해지고 있어도 ‘가해자와 떨어져 자립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고, 폭력이 있으면 자립한다는 공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림 4>와 같이 가정 내의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고령자학대·아동학대와 DV는 명확히 다른 종류의 학대라고 할 수 있지만, DV에 있어서도 공적인 기관에 의한 당사자의 지도·조언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항에서는 ‘양호자의 부담을 경감하시 위한 고령자 및 양호자에 대한 상담, 지도 및 조언 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방지법 제11조는 아동복지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아동학대를 한 보호자의 지도는 ‘親子의 재통합에 대한 배려 그 외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양호한 가정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배려 하에 적절히 행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1)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직업이나 승진의 기회를轻易하게 되는 등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된다.

고 하겠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DV방지법이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가해자의 반성을 촉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고령자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이 관계의 재통합을 위한 당사자의 지도, 조언을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²²⁾.

IV. 향후의 DV방지법

1. DV의 규제의 방법

어떠한 행동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제하는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규범을 형성하고, 당해 행동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당해 행동에 있어서 금전 혹은 劋力의 부담을 주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DV대책에서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 법에 의한 규제

DV대책은 공적기관에 의한 가정 내에서의 폭력에 대한 규제이다. 많은 나라에서 DV대책의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단 법률 등에 의해 전면적으로 규제된다면 그러한 규제에 의하여 발생되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특히 DV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배우자간의 폭력에 대해서는 통상의 폭력과 같이 형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단 아동의 장래에 지장을 주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반드시 사건화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형법으로서 체포된 후 미국,

22) 각주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자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은 가해자 측의 지도에 관한 조문이 있지만 DV방지법에는 이러한 조문이 없다. 동법 제3조, 제4조는 상담, 지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지만 제3조제3항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피해자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지도', 그리고 제4조에서는 '피해자의 상담에 응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것이라고 하여 그 상대나 내용은 피해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가해자 측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영국, 독일, 한국 등 복역을 대체하는 조치로 가해자 생생프로그램수강이나 사회봉사를 선택할 수 있는 국가도 다수 존재 한다²³⁾. 일반적으로 가해자 생생프로그램의 비용은 가해자가 부담하고 있고, 휴직상태에서 장기간 강좌를 수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한국의 보호처분은 사회봉사·가해자 생생프로그램의 수강명령은 10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다) 가해자의 부담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해자 생생프로그램에 관한 조사연구의 추진이 입법되어 있지만²⁴⁾ 그 후 제도화를 향한 진전은 없었다²⁵⁾.

2) 사회규범의 형성

DV방지법의 제정 및 각종 광고·계발활동에 의해 DV를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단 사회적인 규범의 형성은 직접적인 승인이 없을 뿐 도덕이나 체면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 23) 미국에서는 체포된 자중 다수가 복역의 대체조치로서 가해자생생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DV사건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과하지 않는 보호처분제도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적용된다. 보호처분에 있어서 사회봉사·수강명령과 상당위탁은 가해자 생생프로그램 수강이 필수적인 항목으로 되고 있고 수강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한 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 24) 제 25조 국가 및 지방공동단체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의 생생을 위한 지도의 방법, 피해자의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한 조사를 추진하고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인재육성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원문: 第二十五條 (調査研究の推進等) 國及び地方公共団体は、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資するため、加害者の更生のための指導の方法、被害者の心身の健康を回復させるための方法等に關する調査研究の推進並びに被害者の保護に係る人材の養成及び資質の向上に努めるものとする)
- 25) 정부참고인으로서 조사회에 출석한坂東久美子(내각부 男女公同參畫의 국장)는 이하와 같이 발언하였다. '가해자의 생생, 가해자에 대한 대응은 내각부에서도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거나 앞으로 국내에서 자치단체의 부탁을 받아 가해자생생의 프로그램의試行과 검증을 하고 있다. 가해자 생생에 대해서는 제외국을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반드시 실효를 거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좀처럼 방법론으로서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들도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각각의 센터 등에 있어서 가해자대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다고 들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 한다' 제169회 국회참심원소자고령화·공생사회에 관한 조사회 회의록 제8호 5면, 2008년 6월 4일.

3)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함

법률로 직접적인 규제를 하는 것 보다 물리적으로 DV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각국의 DV대책에서 채용하고 있는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가해자로부터 강제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곁을 떠나는 경우의 제약조건으로는 ①아동(자식)의 존재, ②금전, ③거주의 3가지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력의 부여, 숙박시설의 정비 등은 제약의 경감에 기여한다.

일반적으로 특정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전면적인 규제를 하면 그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 DV에 관한 규제의 부작용으로서는 정책비용의 증가, 다른 학대법이나 일반 母子世帶와의 균형, 기존의 법체계와의 정합성, 가족의 해체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각국에 있어서 DV대책은 범죄로서 처벌과 병행하여 DV에 대한 비용을 높게 하는 것에 의해 발생을 방지하는 것 등이 있다. 가해자는 폭력의 代償으로서 각종 부담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DV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평판이 저하되고 다방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DV에 대해 피해자의 보호와 함께 가해자에게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면 손해가 발생 한다’라는 점을 자각시키는 것이 규제의 부작용을 억지하는 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2. DV의 여러 유형과 대응책

DV연구의 선진국인 미국 및 유럽에서는 전술한 것과 같이 DV를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보는 것과 커플간의 힘의 관계(力關係)에 착목한 것의 두 가지의 시각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DV양상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적인 병리현상은 빈곤 등 사회적·개인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 충동적인 DV와 커플간의 힘의 관계를 유리하게 하려는 DV는 전략적인 DV라 한다. 그 외에도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인 개인의 병리적 현상인 사례도 있다. DV대책은 각각의 사례에 의해 다르게 이루어 져야 한다.

① 개인의 병리적 현상의 경우

폭력 그 자체가 가해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 가족관계의 재구축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폭력이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② 사회적인 병리현상의 경우

폭력이 빈곤 등에 의한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선행연구의 결론은 가해자의 취업기회의 확보 등에 의한 경제적인 신분의 개선이 DV 억제에 유효한 경우가 많다. 물론 DV의 가해자에게 우선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줄 수 없지만 가해자에게 취업 등의 지원을 하는 것에 의해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더불어 반성의 기회를 주는 것에 의해 DV의 경감화 및 가족의 재통합에 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

③ 커플간의 힘관계(力關係)의 有利化를 목적으로 한 경우

DV방지법에서 보호시설이나 자립지원책을 충실히 하는 것에 의해 피해자의 이혼의 장애는 확실히 저하된다. 이러한 것은 당연히 가해자 측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힘의 관계를 유리하게 하려 하는 경우도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이익과 이혼의 위험성을 비교한 결과 폭력의 휘두르는 것을 면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②, ③의 경우는 가해자의 경제상황의 개선이나 폭력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에 의해 가해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DV를 면춘다는 수단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①의 패턴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대응수단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자립지원에 의해 피해자 측의 경제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안심감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부부의 힘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DV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DV대책도 자립지원에서 가해자 생생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²⁶⁾.

26) 이상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②, ③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DV를 행하는 가해자의 행동은 합리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결론은 바뀌게 될 것이다.

3. 덧붙이는 말(가해자 갱생프로그램에 관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에서 일본은 '가해자 측의 의식의 개혁'에 대해서 중요시 하지 않았고, 이 점에 관하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 가해자 갱생프로그램이다. 가해자의 인센티브와 함께 스스로 배우는 것에 의해 또한 스스로 판단하는 것에 의해 폭력행위를 멈추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본의 법제도의 체제에 적합한 가해자 갱생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외국과 다른 형태가 요구될 수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하의 논점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폭력이 있어도 헤어질지 아닐지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갱생프로그램의 프로세스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존재할 때 시행될 필요가 있다.

② 지원센터의 상담기능을 가해자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폭력행위의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많은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성향을 자각하고 개선하고자할 의지가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해자 갱생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위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도 재판소나 행정기관의 명령에 의한 가해자 갱생프로그램 수강의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배우자폭력방지법, 가정폭력, 아동학대방지법, 고령자학대방지법, DV.

참 고 문 헌

- CRVAWC, Selected Estimates of the Cost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5.
- ローレンス・レッシグ, コモンズ, 翔泳社, 2002.
- 南野 知恵子/神本 美恵子/山本 香苗/吉川 春子/福島 みづほ, 「詳解DV防止法」, きょうせい, 2002.
- エレン・ペンス,マイケル・ペイマー編, 暴力男性の教育プログラム, 誠信書房, 2004.
- 南野 知恵子/神本 美恵子/山本 香苗/吉川 春子/福島 みづほ, 「詳解改正DV防止法」, 2005.
- 澤田知樹, 日本のDV法は後進的か:米國DV法と対比して考える, 2008.
<<http://ci.nii.ac.jp/naid/110007172025>>
- 内閣府男女共同三監局, 東アジアにおける配偶者からの暴力の加害者更生に関する調査報告書, 2008.
- 法務総合研究所, 配偶者暴力及び児童虐待に関する総合的研究, 2008.
- 内閣府・國家公安委員會・法務省・厚生労働省,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のための施策に関する基本的な方針, 2008.
- 警察廳, ストーカー事案及び配偶者からの暴力事案の対応状況について, 2011.

[Abstract]

The Future Act on Prevention of Spousal Violence

Kim, Jan-Dee

Doctor's Course, Kunguk University

Family violence generally occurs among family members, which includes conjugal violence, child abuse, elder abuse, etc. Among them, conjugal violence accounts for the greatest part. Violence between partners causes a big social loss due to victim's life support cost, medical cost, police and justice cost, loss of work, etc. as well as family breakdown. Nevertheless, in times past, violence between partners was not brought into question because it was regarded as one of family affairs, not a crime. However, in Japan, violence between partners has been grasp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since the mid 1990s and a movement of requesting a full-scale attack happened. As a result, a partner violence protection law was made in 2001. This paper will summarize the Japanese partner violence protection law from the time it was made till this point, and simultaneously consider a new future direction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of it with child abuse and elder abuse protection laws.

Key Words : Act on Prevention of Spous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ct o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ct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DV.